

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5170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박준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8 지분에 관하여 2019. 11.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과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8 지분에 관하여 2019. 11.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19. 9. 20.경 원고에게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개회506363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 20,261,196원, 이자 14,994원, 연체료 92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0. 15.경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21. 3. 30. 기준 원금 20,261,196원, 미수금 6,376,641원, 연체이자 7,686,794원 합계 34,324,631원이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

D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1. 8.경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인 G과 H, D, I, 피고들은 상속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5/6 지분은 피고 B, 1/6 지분은 피고 C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20. 1.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 상태

D은 광주지방법원 2017개회50636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4. 26. 개시결정을, 2018. 8.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 11. 29. 그 절차가 폐지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D 등 상속인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었고, 만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D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3의 지분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2/13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그 중 11/78 지분은 피고 B에게, 1/78 지분은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1/78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78지분에 관하여 각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78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7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1.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4.30㎡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1.98㎡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문간

1.65㎡

2. 광주광역시 동구

답 119㎡

-끝-

